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07
----------	------

발의년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전경원 의원

김규학 의원

김동식 의원

김혜정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안 이유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 및 생략·단축(안 제3조)

- 입법예고의 대상을 조례와 교육규칙으로 하고,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인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 대구광역시공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공고하며, 필요시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법령안의 주요 내용 등 입법예고문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대구광역시공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입법취지를 포함한다)

2. 의견제출 기관·기간·방법

3.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관부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

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